

# 서 울 특 별 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 전화 (02) 731-6372, 6772 / 전송 (02) 731-6374

문서번호 건행58414-2198

시행일자 1995. 10. 1

## 경 유 < 제1안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장
보존	년	<u>3</u> <u>3</u>
국장	(전결)	
과장	<u>f</u>	법무담당관 <u>심사필</u>
계장	<u>sb.</u>	
기안	최성갑	협-조

## 제 목 드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도개 58500 -1932 ('95. 9. 4) 호와 관련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31호 ('95. 2. 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31호 ('95. 5. 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간선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별첨과  
같이 신청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의거 인가 및 고시  
하고자 합니다.

### 첨부: 1) 인가증 및 고시안 1부

### ?) 인가 신청서 1부

< 제2안 >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주택도시국장

## 제 목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공룡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간선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      호)과 같이 인가하였기 보고합니다.

체 루 ; 고시문사본 1루.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건행58414-

1995. 10.

< 제3안 >

수 신 수신처참조

제 목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인가 통보

1. 도개 58500 -1932 ('95. 9. 4) 호와 관련임.

2.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도로)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간선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인가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바람.

첨 부 : 고시문및 인가증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도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노원구청장 (건설관리과장)

< 제4안 >

수 신 공보 1 담당관

제 목 시보게재의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한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간선시설공사'의 고시문 (서울 특별시 고시제1995 - 호) 을 별첨과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사본 및 응지조서 각2부. 끝.

## 건 설 행 정 과 장



# 인가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원구 하계동 336-1 ~ 272번지 유원아파트앞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 간선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도로 폭 = 9M, 연장 = 40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년

6. 사업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5 - 호

7.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위 도시계획사업(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조건을 부하여 인가함.

199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1995. 10. 06

<인가조건>

가. 신청된 공사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기타 유관기관(한전, 체신, 도시가스등)과 사전협의 하여 이종 글착을 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라. 본사업에 편입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전까지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 허가등을 받아야 할 사항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면허, 인가, 허가등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본사업의 준공검사는 설계도서에의거 도시개발공사사장이한다.



#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70호

실사	1995.10.5	제 270 호
담당자	민재계장	법무담당관
1111	吳	九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31호 ('95. 2. 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31호 ('95. 5. 27)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간선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토목부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0월 일

##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원구 하계동 336-1 ~ 272번지 유원아파트앞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 공릉1지구택지개발사업관련간선시설공사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폭 = 9m, 연장 = 40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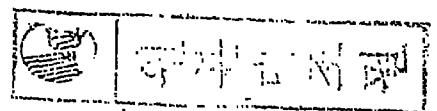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사서

(공용1地块지개발사업관련 긴선시설공사:지하차도)

제자 : 노원구 하계동

물 건 번	지 번	지 목	지 적 (m <sup>2</sup> )	편 일 면 적 (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 유 자 의 권 리 나 운	
1	336-41	전	82m <sup>2</sup>	82m <sup>2</sup>	한건희	노원구 공릉동 376				
2	336-30	전	54m <sup>2</sup>	54m <sup>2</sup>	한건희	노원구 공릉동 376				
3	336-44	전	75m <sup>2</sup>	75m <sup>2</sup>	한건희	노원구 공릉동 376				
4	336-45	전	175m <sup>2</sup>	175m <sup>2</sup>	한건희	노원구 공릉동 376				
5	336-46	전	46m <sup>2</sup>	46m <sup>2</sup>	한건희	노원구 공릉동 376				
6	336-42	철	512m <sup>2</sup>	512m <sup>2</sup>	철드랑					